[별지 제65호서식] (앞 쪽)

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청 인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	
④포 획 장 소				
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			⑥포 획 기 간	
⑦총 기 의 종 류			⑧수렵장사용료	
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구비서류	수수료
1. 수렵면허증 사본 1부	없 음

2.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

※ 참고사항
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, 재활용품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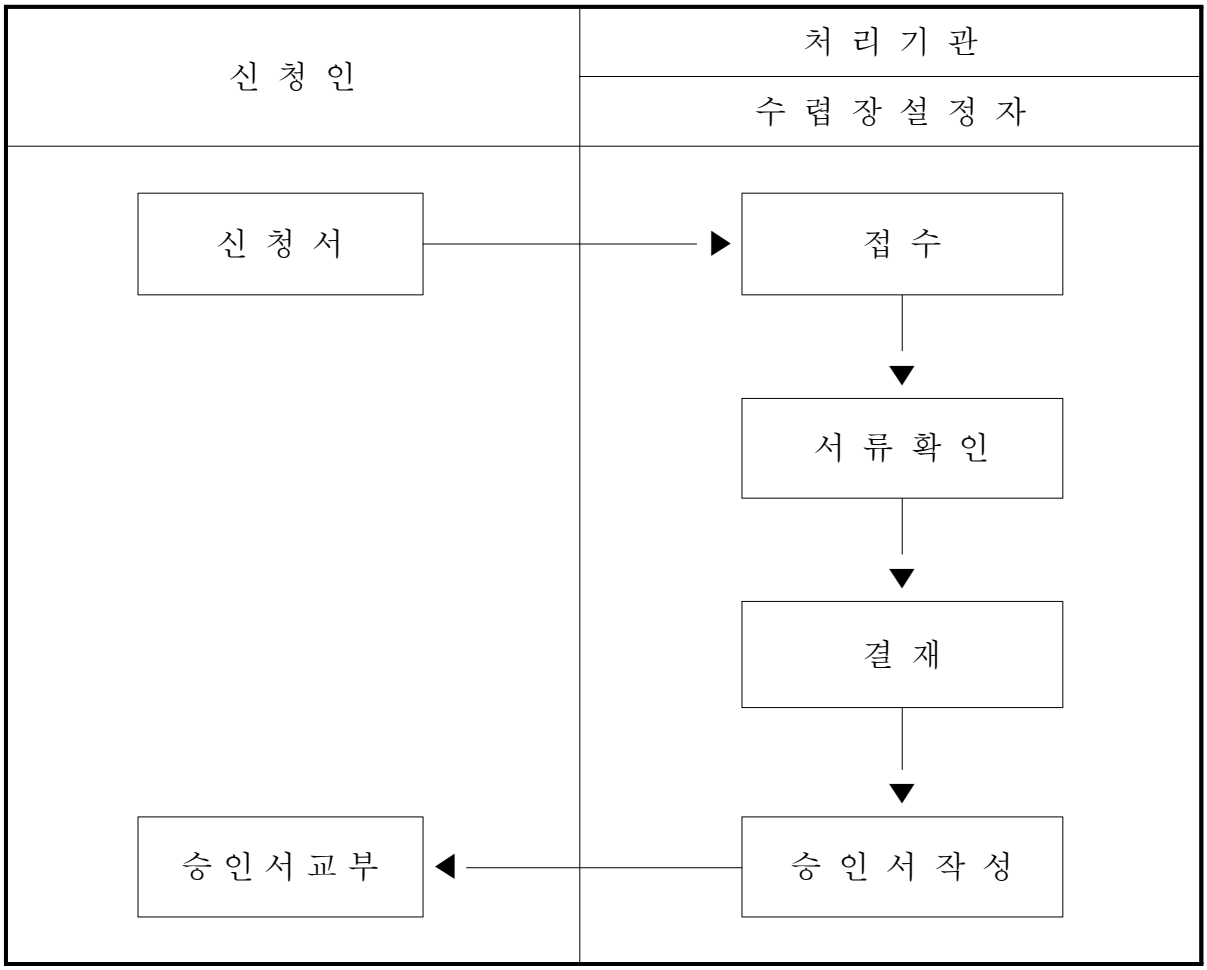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